

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08-21호

『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』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08년 11월 11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문화·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문화상의 시상 확대함으로써 각 분야별 문화예술인의 사기진작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인천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코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2인까지 시상할 수 있는 단서 신설(안 제2조제2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일(월)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참조: 시의회 문교사회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24, 팩스 032-440-687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4. 참고자료

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”로 한다
문화상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 문화상(이하”문화상“이라 한다)”를“인천광역시 문화상 ”으로 한다

제2조 본문 중 “인천광역시 문화상”을“인천광역시 문화상(이하”문화상“이라 한다)”로 하고, 동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
탁월한 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2인까지 시상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인천광역시문화상조례</u>	<u>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</u>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향토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<u>인천광역시 문화상(이하“문화상”이라 한다)</u> 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인천광역시 문화상</u> ----- ----- -----
제2조(시상부문 및 인원) ① <u>문화상</u> 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 ~ 5. (생략) ② 제1항 각호 규정의 시상부문별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하되, 추천된 수상후보자가 없거나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. (<u>단서신설</u>)	제2조(시상부문 및 인원) ① <u>인천광역시 문화상(이하“문화상”이라 한다)</u> ----- 1~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각 부문별로 추천된 수상후보자중 분야를 달리하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가 다수 인 경우에는 2인까지 시상할 수 있다.</u>